

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(이하 “서울교대”라 한다)와 한국교육방송공사(이하 “EBS”라 한다)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서울교대와 EBS 간에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력한다.

1. 미래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구와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
2. EBS 콘텐츠 및 교육자료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
3. 교사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 (효력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제4조 2항에 따른 협약 해지의 통보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
제4조 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①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본 협약서의 개정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어느 일방이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1. 본 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
2. 공동 협력사업 평가 결과 협력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
3. 기타 양 기관 협력 사업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

제5조 (비밀유지)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, 공개 필요시 상호 서면 동의하에 진행한다.

② 제1항은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유효하다.

제6조 (기타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하에 정한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, 상호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9월 12일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장신호

장신호



한국교육방송공사
사장 김유열

김유열